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4기통”을 “2000CC”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자동차(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
를 면제한다.

(별표) :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별지첨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2 조(면제대상) ①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보철용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구세를 면제한다.</p> <p>1. 토지 : 종합토지세, 건물 : 재산세</p> <p>2. 자동차 : 면허세</p> <p>② <u>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상이등급구분표중 2급은 분류번호 14, 79, 98, 102, 104, 105호, 3급은 분류번호 5, 22, 23, 24, 27, 31, 78, 81, 83, 86, 89, 503호 4급은 분류번호 109, 112, 113, 504호, 5급은 분류번호 26, 29, 41, 77, 92, 505호에 해당하는 자 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에 한하며, 이 경우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는 하지계통호수(분류번호 30, 32, 36, 37, 40, 44, 49, 50, 53, 54, 59, 60, 65, 67, 70,</u></p>	<p>제 2 조(면제대상) ① -----</p> <p>-----</p> <p>-----</p> <p>-----2000CC</p> <p>-----</p> <p>-----</p> <p>-----</p> <p>-----</p> <p>② <u>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 이하로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u></p>

현행	개정안
<p>116, 117, 119, 121, 122, 126, 127, 131호)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 철용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로써 1대에 한한 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별 표)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 급	14, 79, 98, 99, 102, 104, 105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 급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